

의안번호	제 226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407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정훈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7일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최정훈, 노금식, 김성대,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이정범

## 1. 개정이유

- 통상 새마을 지도자의 범위에는 새마을회의 4개 회원단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회) 지도자를 말하지만, 현재 조례상 제1조의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와 제8조 추천자의 범위에 직·공장회가 미포함 되어 있기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한 제1조)
  -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에 직·공장 지도자 포함
- 장학생 신청자에 직·공장회장 포함 및 추천자를 시군 새마을 회장으로 통일(안 제8조)
  - 시군 새마을회가 법인 등록 전에는 지군 지회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법인 등록이 되어 시군 새마을회장 명칭만 사용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도민소통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3년 2월 24일 ~ 3월 1일(5일간)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 및 직·공장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 중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를 “시·군 새마을회장  
이”로 하고, “부녀회장 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를 “부녀회장, 문  
고회장 또는 직·공장회장의 신청을 받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지도자(<u>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새마을회”라 한다) <u>시·군지회장</u> <u>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u>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u>부녀회장</u> <u>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u>,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새마을회 회장에게 추천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지도자(<u>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 및 직·공장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새마을회”라 한다) <u>시·군 새마을회장이</u>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u>부녀회장, 문고회장 또는 직·공장회장의 신청을 받아</u>,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새마을회 회장에게 추천한다.</p>

## 관련법령 발취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 사 유

- 통상 새마을 지도자의 범위에는 새마을회의 4개 회원단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회) 지도자가 포함되지만, 현재 조례상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에 직·공장회가 누락되어 있음.
- 이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및 제8조 장학생 추천자의 범위에 직·공장회가 미포함 되었기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 이 조례에 의거하여 기시행중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만 확대될 뿐 지원되는 장학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